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0원
- 징수결정액 : 80,500원
- 실제수납액 : 80,500원
- 결손처분액 : 0원
- 미수납액 : 0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0%임.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	81	81	—	—	—	—	100.0
세외수입	—	81	81	—	—	—	—	100.0
임시적 세외수입	—	81	81	—	—	—	—	100.0
기타수입	—	81	81	—	—	—	—	100.0
그외수입	—	81	81	—	—	—	—	100.0

※ 결손처분액 = 불납결손액 + 시효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 496,367천 원
- 예산증감 : 0 원
- 예산현액 : 496,367천 원
- 지출액 : 421,178천 원
- 이월액 : 0 원
- 불용액 : 75,189천 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5.1%(전년도 23.7%)가 발생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천만원, 지출잔액 65,189천원임.

〈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496,367	421,178	-	75,189	15.1
사업예산계	366,669	366,669	-	32,060	8.7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366,669	334,609	-	32,060	8.7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소	21,260	18,090	-	3,170	14.9
고충민원 조사 처리	21,260	18,090	-	3,170	14.9
시민참여 활성화	212,732	201,119	-	11,613	5.5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7,300	33,496	-	3,804	10.2
공공사업 감시평가	102,600	96,013	-	6,587	6.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27,832	26,610	-	1,222	4.4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45,000	45,000	-	0	0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132,677	115,401	-	17,276	13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 확대	120,977	113,870	-	7,107	5.9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11,700	1,531		10,169	86.9
일 반 예 산 계	129,698	86,569	-	43,129	33.3
기 본 경 비	129,698	86,569	-	43,129	33.3

-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 전용 : 해당사항 없음.
-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사항 없음.

-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22년도 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0천 원

○ 매각·폐기 등 0천 원

○ 당해연도말 총 수량 4개, 현재액은 5,568천 원임.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100%이나 예산편성 없이 8만 1천원을 징수하였음.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	81	81	-	-	-	-	100.0
세외수입	-	81	81	-	-	-	-	100.0
임시적 세외수입	-	81	81	-	-	-	-	100.0
기타수입	-	81	81	-	-	-	-	100.0
그외수입	-	81	81	-	-	-	-	100.0

※ 결손처분액 = 불납결손액 + 시효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가. 세입예산 편성 철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중 “그외수입”의 발생은 시민참여옴부즈만 원천징수액 과소 징수에 따른 추가 징수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연가보상비 반납조치에 따른 것임.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그 외수입 세부내역〉

연번	회계연도	과세번호	징수결정일자	실제수납액	과세내역	처리사유
1	2022	247	2022. 1.18.	24,200	시민참여옴부즈만 원천징수액 과소 청구분 추가 징수	시민참여옴부즈만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액을 과소 청구하여 청구분을 추가 징수하여 그외수입으로 처리
2	2022	248	2022. 1.18.	24,200	시민참여옴부즈만 원천징수액 과소 청구분 추가 징수	시민참여옴부즈만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액을 과소 청구하여 청구분을 추가 징수하여 그외수입으로 처리
3	2022	292	2022. 2.23.	32,100	연가보상비 반납	위원회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35시간근무)에게 과다지급된 연가보상비 반납으로 그외수입으로 처리

〈 시민참여옴부즈만 원천징수액 과소 청구분 추가 징수 내역〉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336(2021. 12. 21.)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11월 청렴계약 참관수당 관련하여 원천징수 과소 금액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처리 하고자 합니다.

- 반납내역 -

연 번	성 명	원천징수 금액	원천징수 과소금액	추징금액	계
1	000	48,400	24,200	24,200	24,200*2
2	000	48,400	24,200	24,200	=48,400

〈 연가보상비 반납 내역〉

우리 위원회에 근무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중 근무시간 내 비대면회의에 참석하여 겸직활동을 하면서 연가, 외출 등 복무관리시스템 미등록한 사례가 발견되어 '21년 연가보상비를 아래와 같이 환수하고자 합니다.

- 가. 건 명 : 연가보상비 반납
- 나. 반납대상 : 000(시간선택임기제가급)
- 다. 반납금액 : 32,100원(금삼만이천일백원)

○ 반납내역

(단위:원)

연번	대상자	반납액	산출내역	비고
1	000	32,100	1일(7시간) 연가보상비 112,350원 112,350원×2시간/7시간=32,100원	주35시간 근무자

- 라.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그외수입)
- 마. 반납방법 : 세외수입 처리(고지서 발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없는 ‘그외수입’ 세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바,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에 따라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4년간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없이 수납 발생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그 외수입 (224-07)	2022	-	80,500	80,500	-
-	2021	-	-	-	-
그 외수입 (224-06)	2020	-	457,940	457,940	-
그외수입 (224-06)	2019	-	5,128,190	5,128,190	-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7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2. 세출결산

-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출예산 결산액은 예산현액(496,367천원) 대비 84.9%(421,178천원)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15.1%(75,189천원)로 전년도(23.7%) 대비 8.6%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2.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496,367	421,178	-	75,189	15.1
사업예산계	366,669	366,669	-	32,060	8.7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366,669	334,609	-	32,060	8.7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소	21,260	18,090	-	3,170	14.9
고충민원 조사 처리	21,260	18,090	-	3,170	14.9
시민참여 활성화	212,732	201,119	-	11,613	5.5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7,300	33,496	-	3,804	10.2
공공사업 감시평가	102,600	96,013	-	6,587	6.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27,832	26,610	-	1,222	4.4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45,000	45,000	-	0	0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132,677	115,401	-	17,276	13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 확대	120,977	113,870	-	7,107	5.9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11,700	1,531	-	10,169	86.9
일반예산계	129,698	86,569	-	43,129	33.3
기본경비	129,698	86,569	-	43,129	33.3

가. “고충민원 조사 처리” 집행잔액 과다

- 본 사업은 고충민원 직접조사 및 민원배심제 운영을 통해 시민의 권리구제 및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민원배심제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산현액(21,260천원) 대비 불용률은 14.9%(3,170천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배심원 수당 등 사실상 본 사업의 사업비로써 ‘사무관리비(예산현액 7,860천원)’의 불용률은 20.1%에 달하고 있음.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산출기초)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21,260	18,090	3,170	14.9
고충민원 조사처리	사무관리비	합계	7,860	6,277	1,583	20.1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960	960	0	0.0
		민원배심제 운영	6,900	5,317	1,583	22.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고충민원 조사 업무 추진	13,400	11,813	1,587	11.8

- 산출기초별로 살펴보면, ‘민원배심제 운영’은 22.9%(1,583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1.8%(1,58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 면밀한 산출기초 분석 없는 관행적 예산편성으로 매년 과다한 불용률(‘20년 26.1%, ’21년 65.6%, ’22년 14.9%)이 발생되고 있는바, 과다한 불용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고충민원 조사처리” 집행 내역〉

(단위:천원)

회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고충민원 조사처리	31,200	23,047	8,152	26.1%	28,220	9,697	18,523	65.6%	21,260	18,090	3,170	14.9%

- 또한,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등의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원배심제’는 개최 실적이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져 2022년도의 경우 2건에 그치고 있고,

〈*최근 5년간 민원배심제 실적 현황화〉

(단위 : 건/회)

구 분 연도별	접수 안건	개최 안건 (회의 횟수)	처리 결과		이행 현황		
			권고 등*	기각	이행	미이행	이행중
계	19	19(32)	15	4	12	3	-
2022년	2	2(2)	2	-	-	2	-
2021년	1	1(1)	-	1	-	-	-
2020년	3	3(4)	3	-	2	1	-
2019년	4	4(6)	4	-	4	-	-
2018년	9	9(15)	6	3	6	-	-

※ 처리결과 결과 권고 등에는 권고 및 의견표명을 포함한 결과임.

-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전년도(12,900천원) 대비 46.5%(6,000천원) 감액하여 편성(6,900천원)하고도 20% 이상의 높은 불용률을 유지(‘20년 : 44.9%, ‘21년 87.6%, ‘22년 : 22.9%)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바, 매년 이어지고 있는 높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세심한 예산추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민원배심제 운영” 예산 집행실적〉

(단위: 천원)

연도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2	민원배심제 운영	6,900	5,317	1,583	22.9%
2021	민원배심제 운영	12,900	1,600	11,300	87.6%
2020	민원배심제 운영	10,700	5,891	4,809	44.9%

- 또한,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민원배심제 활성화를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집행잔액 과다

○ 본 사업은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감사청구 심의회에 6개 분야*의 외부전문가, 시민 등을 감사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사업으로,

*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

- 예산현액(37,300천원) 대비 불용률은 10.2%(3,804천원)이고, 특히 ‘감사청구 심의회 운영’의 경우 예산현액(10,500천원) 대비 23.6%(2,483천원)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37,300	33,496	3,804	10.2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	합계	21,300	18,817	2,483	11.7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10,500	8,017	2,483	23.6
		감사·조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수당	10,800	10,800	0	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합계	16,000	14,679	1,321	8.3
		시민·주민감사 업무추진	16,000	14,679	1,321	8.3

○ ‘감사청구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5조)¹⁾에 근거하여 주민감사 청구 발생 시 개최되며, 매년 개최실적*이 저조해 20% 이상의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음.

* 감사청구심의회 개최 실적 : 2019년 3회, 2020년 3회, 2021년 4회, 2022년 1회

〈최근 3년간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집행 내역〉

(단위:천원)

회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사무관리비	11,100	4,710	6,390	57.6%	10,500	7,320	3,180	30.3%	10,500	8,017	2,483	23.6%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감사청구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청구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럼에도 위원회의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에 따라 매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을 적기 적소에 투입할 수 없게 하는 예산의 비효율적 예산운영의 원인이라고 할 것인바, 적절한 예산편성 및 실적 제고를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집행 저조

○ “세계옴부즈만협회(IOI)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예산편성(11,700천원) 후 86.9%(10,169천원)를 불용 처리하였음.

〈세계옴부즈만협회(IOI)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단위: 천원)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합계	11,700	1,531	10,169	13.1	86.9
201-01사무관리비	IOI 연례보고서 및 뉴스레터 게재 번역비	1,000	970	30	97.0	3.0
202-03국외업무여비	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교류 및 견학	10,000	-	10,000	0.0	100.0
310-02국제부담금	IOI 연회비	700	561	139	80.1	19.9

- 특히 산출기초 내용 중 “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교류 및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는 예산편성(10,000천원) 후 전액 불용(100%) 처리 하였음.
- 2022년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면 활동 지양 정책에 따라 해외 교류가 어려웠던 점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조정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되었음.
- 본 사업은 대면 행사성 사업으로써 추가경정예산 감액편성의 우선 대상이라는 점에서, 예산 조정을 거치지 않고 결국 국외여비 전액을 불용 처리하게 되어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함께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태라고 할 것임.

〈세계음부즈만협회(IOI 개요)〉

- **설립시기** : 비영리 국제조직으로 1978년 창설
- **설립목적** : 음부즈만 개념의 확산 및 세계적 발전 도모 및 전 세계음부즈만들간 정보·경험 교환
- **사무국** :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 소재
- **참여현황** : 전세계 118개국 215개 기관, 우리나라 5개 기관

라. 국내여비 등 과다 비용

○ 위원회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써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로, 예산현액(129,698천원) 대비 33.3%(43,139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국내여비는 예산현액(29,400천원) 대비 75.1%(22,090천원) 집행잔액 발생

〈기본경비〉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용률(%)
합계			129,698	86,569	43,129	33.3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합계	91,898	70,860	21,038	22.9
		기본 사무 종이류	725	725	0	0.0
		소규모 수선비	175	175	0	0.0
		행정장비 수리비	1,512	1,512	0	0.0
		도서 구입비	250	250	0	0.0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50,400	29,362	21,038	41.7
		인쇄비	30,136	30,136	0	0.0
		조사, 민원배심제 등 자료수집비	3,000	3,000	0	0.0
		피복비	5,700	5,700	0	0.0
	국내여비	합계	29,400	7,310	22,090	75.1
		여비(관내, 관외)	29,400	7,310	22,090	75.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합계	3,300	3,300	0	0.0
		사업소장(4급 상당)	3,300	3,300	0.0	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합계	5,100	5,100	0	0.0
		정원 30인 이하, 정원 초과	5,100	5,100	0	0.0

-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 ‘국내여비’는 매년 50% 내외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을 적기 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예산운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인바, 위원회에서는 매년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출장 수요에 대한 통계적 분석 활용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에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국내여비” 집행 내역〉

(단위:천원)

회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국내여비	25,320	9,624	15,696	62.0%	33,320	15,360	17,960	53.9%	29,400	7,310	22,090	75.1%

마. 예산의 20%이상 불용사업 관련

- 2022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4억9천6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15.1%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규모(2.2%) 보다 상당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사무관리비)”,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국외업무여비)”, “기본경비(사무관리비)”, “기본경비(국내여비)” 등 총4개 부분의 경우는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음.

○ 과도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바, 전년도 지출 실적을 감안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22회계연도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무관리비)	7,860,000	6,276,620	1,583,380	20.1%	○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1회 실시 및 '민원배심제' 특성 상 신청 건수가 없어 민원배심제 개최건이 저조하여(2건)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음
세계옴부즈만협회 (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국외업무여비)	10,000,000	0	10,000,000	100.0%	○ 세계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국외여비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지속으로 미실시되어 전액 불용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91,898,000	70,859,500	21,038,500	22.9%	○ 시의회, 주요업무보고서(계획서), 회의자료 등 인쇄 자제와 민원조사 관련 자료 수집 등이 코로나19로 비대면 등으로 실시 되어 일부 예산집행이 미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29,400,000	7,309,500	22,090,500	75.1%	○ 감사, 민원 조사, 감시활동 등 추진과정에서 현장활동이 코로나 19지속으로 감소하여 국내여비 집행저조

전 문 위 원	김 정 덕	입 법 조 사 관	손 정 욱
---------	-------	-----------	-------